

「예탁금거래 기본약관」 개정 안내

항상 원당농협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「예탁금거래 기본약관」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사유

- 공정거래위원회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약관 변경 협조 요청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약관 변경 시 통지기간 예외 인정
 - 변경 내용이 거래처에 유리하거나 경미한 경우 즉시 통지
-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의무 강화 및 구체화
 - ▷ 통지의무 강화 : 소비자 유·불리를 불문하고 통지 의무 부과
 - ▷ 통지내용 구체화 : 변경내용(신·구 조문대비표) 통지
 - ▷ 통지수단 완화
 - 고객에게 유리한 변경인 경우 :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
 -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: 3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
- 약관 변경 시 통지의무 대상 축소
 - ▷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문구 변경인 경우 통지하지 않음

□ 약관 시행일 : 2026. 01. 05. (월)

□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: 여

- 고객님께서서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2025. 12. 04.

원당농업협동조합장